

[일련번호 : 8]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이행 부적정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3조(채용공고)에 따라 채용 공고에는 각 전형 단계별 평가기준(배점비율, 평정표 등), 동점자 처리기준, 채용 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제15조(심사위원의 제척·회피 등)에 따라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스스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위원 회피신청서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규정 제20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 및 별표2에 따라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을 적용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동점자가 있을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합격 처리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은 채용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하면 취업지원실시기관은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

지원대상자의 점수에 가점(만점의 10% 또는 5%)하여야 하며,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여야 한다.

같은 규정 제28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에 의하면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다만,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별도 보관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 또는 파기하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응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2023년부터 2025년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보조(현장조사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채용공고 사항 누락,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 미흡, 최종합격자 선정, 채용서류 반환 등과 관련하여 채용 관련 규정을 부적절하게 이행한 사실이 있다.

[표]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 내역

구분	부적정 사항
제13조(채용공고)	- 2025년 채용 : 평정요소별 배점비율 누락 - 2024년 채용 : 평가기준(평정요소 및 각 배점비율) 누락
제15조(심사위원의 제척 회피· 등)	- 채용부서장은 심사위원으로 회피해야함에도 2023년 현장조사원 및 업무보조원, 2024년 업무보조원 채용 시 ▣▣▣과장이 면접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면접심사에 참여함
제20조(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	- 2025년 채용에서 법정가점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가점 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채용계획 및 공고에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2023~2025년 채용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있는 경우 ‘법정가점을 받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정하여야 하나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으로 정하지 않고 ‘서류심사 고득점자’ 또는 ‘고득점자, 양천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로 정함
제21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기준은 채용계획에 따른다고 되어 있음에도 2025년 업무보조원(1월, 4월) 및 현장조사원 채용계획에서 예비합격자를 각 2명, 1명 및 2명 선정한다고 계획하고 실제 최종합격자 선정 시 예비합격자를 각 0명, 2명 및 3명 선정하여 채용계획과 다르게 인원을 선정함. -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을 선정하지 않음.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발표일로부터 6개월 등으로 설정하여 명확히 하고 이를 채용계획 및 공고에 포함시켜야 함. - 2024년 채용에서 최종합격자 결원발생 시 차점자 순으로 적용이라고 계획·공고하고, 최종합격자 선정 시에는 예비합격자 2명을 선정함.

구분	부적정 사항
제28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 2023년 채용에서 채용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함.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